

#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소장, 참가신청서, 재심소장,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(법률 제19353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 및 「민사소송법」(법률 제9354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이 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법원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의 민감정보,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,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사건의 접수 보류 사무를 추가함(안 제5조의2제3호)
- 금전·유가증권·우표·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된 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
-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날인할 접수보류인의 양식 및 날인 방법, 접수 보류된 소장등에 대한 보관 및 정보 관리 방식 등에 관한

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의2 신설)

4.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호 중 “접수”를 “접수 및 접수 보류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·처리) 접수한 문서에 금전·유가증권·우표·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·수량·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,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) ①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, 참가신청서, 재심소장, 준재심소장(이하 “소장등”이라 한다)에는 접수보류인(별지 제1호의2서식)을 찍는다.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,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

칙」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교란에 기재한다.

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·물건(이하 “소장등관계서류·물건”이라 한다)을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·폐기하되, 접수하거나 반환·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.

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,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·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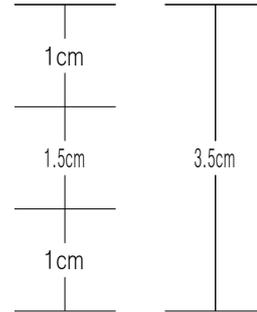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의2서식] 접수보류인

보류	제출일시:
	제출방법: (방문, 우편, 당직 등) 제출
비고	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의2(민감정보 등의 처리)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의 민감정보,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,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사건의 <u>접수</u>, 관련 증명서 발급, 기록 열람, 정보제공,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</p>	<p>제5조의2(민감정보 등의 처리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 <u>접수 및 접수 보류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8조(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·처리)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·유가증권·우표·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·수량·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8조(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·처리) 접수한 문서에 금전·유가증권·우표·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·수량·금액 등을 전산입</u></p>

<신 설>

력하며,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) ①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, 참가신청서, 재심소장, 준재심소장(이하 “소장등”이라 한다)에는 접수보류인(별지 제1호의2서식)을 찍는다.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,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.

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·물건(이하 “소장등관계서류·물건”이라 한다)을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4

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·폐기하되, 접수하거나 반환·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.

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,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·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578